

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8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

### 2. 주요내용

조례 제1조(목적) 및 제3조(신고대상 및 방법)에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추가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3. 4. 13.~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: 원안의결(2023. 5. 1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”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”을 “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 「물환경보전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”을 “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</u>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및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신고대상 및 방법) ① 신고 대상은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 및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,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·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및 「<u>소음진동관리법</u>」 등에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신고대상 및 방법) ① ---- -----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및 「<u>소음진동관리법</u>」 등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소음·진동관리법

[시행 2023. 7. 1.] [법률 제19150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

제46조의2(포상금 지급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·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30.]

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개정과 관련하여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위반행위 신고 및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강주연
연 락 처	02-3153-9277